

보 도 자 료

보도 2016. 9. 30(금) 14:00부터 배포 2016. 9. 29(목)

책임자	금융정책실 윤성훈 실장(3775-9016)	작성자	변혜원 연구위원(3775-9027)
		홍보담당	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 총 4매

제목: 보험연구원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 개최

- □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(회장: 맹수석)가 주최 하는 「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」 세미나가 9월 30일(금)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됨.
 -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 1주제 「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」 발표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공시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.
 - 주소현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)는 제 2주제 「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」 발표를 통해 미국, 영국, 호주의 보험소비자 보호 시 스템과 규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.
 - 이후 언론계, 학계, 금융당국, 보험업계, 금융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됨.

〈 제 1주제:「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」〉

<u>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 필요</u> - 보험소비자의 상품이해력 및 상품 비교가능성 제고 방안 제시

□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은 보험규제를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- 보험규제 개혁은 상품개발의 다양성 확대와 상품가격의 자율성 제고
 를 통해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.
- 그러나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, 상품 비교가능성, 판매자 신뢰성, 효과적 사후적 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함.
- □ 동 발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 제고 관련 제도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교공시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검토함.
- □ 먼저,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**정보의 단순화와 이용 편의성**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, 핵심상품설명서도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될 필요
 -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'FINE'의 개설 등 최근 소비자의 금융정 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.
 - 다만, 현재 보험정보 관련 웹페이지들은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공하고 있음.
 - 한편 저축성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의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,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짐.
- □ 로드맵 시행 이후 비교공시가 강화되었으나, 이해가능성이나 사용가능 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 - 비교공시 강화를 위해 '보험다모아'가 개설되었으며, 이를 통해 시장경 쟁을 유도하고 있음.
 - 다만,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비교공시 사용이 용이한 반면, 기타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□ 변혜원 연구위원은 "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 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"고 주장함.
 - 효과적 정보공시를 위해서는 첫째,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 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할 필요
 - 둘째,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 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, 시각적 효과도 고려하여 개선
 - 셋째, 비교공시의 사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·변형할 수
 있는 선택엔진*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
 - * 선택엔진(choice engine)이란 일종의 비교공시 시스템으로서 정보의 조직화,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한 조건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함.

< 제 2주제:「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」>

보험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할 필요

- 미국, 영국, 호주에서와 같이 행위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

- □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양적 경쟁에 의한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2015년 10월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을 발표함.
 - 주요내용은 사전적 규제 위주에서 사후 감독 강화로의 전환과 보험소 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임.
 -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은 보험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소비 자 보호 강화의 내용을 포함함.
- □ 보험소비자 보호의 **해외사례로 미국, 영국, 호주**의 보험소비자 보호 시 스템과 행위규제 내용을 살펴봄.

-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기구인 Federal Insurance Office(FIO)가 보험상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연방 정부 규제상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내용이 있음.
- 영국은 영란은행(Bank of England) 산하의 PRA와 함께 독립기구인 FCA가 금융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, Consumer Insurance Act 2012에서 보험상품 거래 의무를 명시함.*
 - * PRA: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, FCA: Financial Conduct Authority
- 호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인 APRA가 있고, ASIC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담당함.**
 - ** APRA: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, ASIC: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
- □ 주소현 교수는 "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 측면에서는 차이 가 있으나,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에서 사전적, 사후적 활동을 포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"고 평가함.
 - 각국의 금융 및 규제 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상이하나, 독립된 소비자보호 기구가 존재
 -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 및 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함.
 - 각국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에 활용 가능한 원칙을 제시

<별첨> 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kiri.or.kr